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5.04.21.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1. 미국에 입욕제(배쓰밤) 수출 예정이며 해당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함.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제품 분류

입욕제에 대한 FDA의 유권해석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비누를 보면, 단순 세정기능이 있는 제품만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제품일지라도 제품 홍보문구, 표시사항, 마케팅 방법에 따라 세정 이외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누 규제 예시

우리나라에서 고체비누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약용성분이 있는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고체비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관	성분	기능 (예시)
공산품 비누	CPSC	alkali salts of fatty acids	세정
화장품 비누	FDA	synthetic detergent가 첨가된 경우	수분공급, 탈취 및 향기전달
의약품 비누	FDA	약용성분	항균, 여드름 완화

공산품으로 분류하는 일반적인 비누는 특정 기능/효능의 표시 없이 비누로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화장품의 기능 (수분공급, 향)을 가진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여드름 치료 및 항균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성분 및 제품포장에 표시할 문구(claim)가 무엇인지가 분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참고자료

- FDA - Soaps & Lotions:

<http://www.fda.gov/Cosmetics/ProductsIngredients/Products/ucm388824.htm>

- FDA - Soap: FAQs

<http://www.fda.gov/Cosmetics/ProductsIngredients/Products/ucm115449.htm>

- FDA - Is It a Cosmetic, a Drug, or Both? (Or Is It Soap?)

<http://www.fda.gov/Cosmetics/GuidanceRegulation/LawsRegulations/ucm074201.htm>

- FDA > Is It a Cosmetic, a Drug, or Both? (Or Is It Soap?) (한국어)

<https://www.fda.gov/media/181691/download>

▶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CPSC 규제**

비누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FDA의 비누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규정 [21 CFR 701.20]에 따르면 FDA는 "비누"라는 용어가 **지방산 알칼리염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비휘발 물질 덩어리이며 제품의 세제 기능이 알칼리-지방산으로 인한 것인 경우. 제품이 전적으로 비누로서 표시(라벨), 판매 및 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제품이 다음과 같은 정의에 해당할 경우, FD&C Act 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 공산품으로서 CPSC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 the bulk of the nonvolatile matter in the product consists of an alkali salt of fatty acids and the product's detergent properties are due to the alkali-fatty acid compounds, and
- the product is labeled, sold, and represented solely as soap

* 출처 연방규정 [21 CFR 701.20]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part-701>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비누는 CPSC (www.cpsc.gov)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산품이며, 우리나라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와 같이 세부 요구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제품 포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Soap (비누임을 밝히는 문구)
- * 총 중량 (net weight of product)
- *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 * 성분 (권장사항)

※ 출처

- Candle and Soap About.com - How to Label Your Soaps for Sale
: <http://candleandsoap.about.com/od/soapglossary/a/soaplabeling.htm>

※ CPSC에서 고시한 다른 제품관련 세부 요구사항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그 목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기 CPSC 자료 참고)

- CPSC > Regulations, Mandatory Standards and Bans

<http://www.cpsc.gov/en/Regulations-Laws--Standards/Regulations-Mandatory-Standards-Bans>

▶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FDA 규제**

이에 따라 제품이 단순 세정기능이 있는 비누로 분류될 경우 공산품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제품이 FDA가 명시하는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한다면 FDA 화장품규제가 적용됩니다.

연방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에 따르면 (i) “화장품”이란 외모를 청결, 미화, 매력을 증진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분무하거나 더하거나 기타 도포하는 용도의 품목입니다.

(i) The term “cosmetic” means (1) articles intended to be rubbed, poured, sprinkled, or sprayed on, introduced into, or otherwise applied to the human body or any part thereof for cleansing, beautifying, promoting attractiveness, or altering the appearance, and (2) articles intended for use as a component of any such articles; except that such term shall not include soap.

* 출처 [FD&C Act, sec. 201(i)]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21/html/USCODE-2011-title21.htm>

미국 시장에서 화장품은 크게 ‘미국 연방 식품, 의약, 화장품 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과 “올바른 포장 및 라벨링 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의 법적 관리를 받습니다. 기능성이나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화장품의 경우 시판 전 승인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사용된 색소(color additives)의 경우 FDA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또한 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에 따라 FDA에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 및 제품을 등재해야 하며 사용한 원료가 FDA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하고,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품 분류

귀사제품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soap’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화장품 규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FDA가 정의하는 화장품의 정의에 따라 귀사 제품의 분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성분 및 제품포장에 표시할 문구(claim)가 무엇인지가 분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별도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증 표준 콜센터

보통 “personal care products(개인위생용품)”으로 여겨지는 세척이나 미용의 목적을 둔 제품들, 미국 화장품 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FDA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 피부보습제(skin moisturizers), 향수(perfumes), 립스틱(lipsticks), 매니큐어(fingernail polishes), 눈, 얼굴메이크업제품(eye and facial makeup preparations), 샴푸(shampoos), 펌약(permanent waves), 머리염색약(hair colors), 치약(toothpastes), 데오도란트(deodorants) 등

다만, 일부는 약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용도(intended use)와 효능, 효과(claim)에 대한 표현 및 마케팅 방법에 따라 같은 제품도 제품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피부보호제(립밤, 아기연고), 치료의 효능(therapeutic claims)을 표방하고 시판되는 구강세정제(mouthwashes), 땀, 발한 배출 억제제(antiperspirants), 비듬, 여드름치료제(treatments for dandruff or acne) 등

일부 제품의 경우 화장품과 약 두 가지 모두 해당합니다. 이는 한 제품이 두 가지 제품의 용도(intended use)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샴푸는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을 세정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비듬방지샴푸(antidandruff shampoo)는 머리카락세정과 비듬치료의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인 동시에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화장품과 의약품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예) 불소함유치약(toothpastes that contain fluoride), 땀 억제 기능을 포함한 데오도란트(deodorants that are also antiperspirants), 썬블럭 기능을 가진 보습제 및 메이크업제품(moisturizers and makeup marketed with sun-protection claims) 등

따라서 귀사의 제품은 귀사가 제품을 어떻게 표현(라벨링)하고 마케팅 하는 지에 따라 제품 분류 및 그 규제도 달라지므로 귀사의 판매 의도에 따라 제품분류를 판단하시고 이에 해당되는 규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화장품으로 판매할 시 그 효능 및 제품설명에 대한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DA > FDA Basics for Industry > Are all "personal care products" regulated as cosmetics?

<https://www.fda.gov/industry/fda-basics-industry/are-all-personal-care-products-regulated-cosmetics>

- PART 355 -- ANTICARIES DRUG PRODUCTS FOR OVER-THE-COUNTER HUMAN USE

Subpart C--Labeling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355.50>

- FDA > Cosmetics Safety Q&A: Personal Care Products

<https://www.fda.gov/cosmetics/resources-consumers-cosmetics/cosmetics-safety-qa-personal-care-products>

- FDA > "Cosmeceutical"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labeling-claims/cosmeceutical>

유의 사항

▶ 유의사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종 자율/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보다는 리콜/처벌 등의 사후 엄격한 관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 주별규제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로 이루어진 국가로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주별로 각종 민간기관의 실험·연구 등으로 기준화 및 규격화된 규격을 채택하여 강제하거나 주별 규제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강제인증과 같이 통용될 수 있으며 **해당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내 강제처럼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마다 규제여부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별 규제 및 임의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가차원의 규제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주별 규제는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의 업무 대응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는 환경규제인 The Proposition 65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정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예) OEHHA > Proposition 65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OEHHA > The Proposition 65 List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TUV SUD > California 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www.tuv-sud.kr/kr-kr/activity/testing-product-certification/california-proposition-65>

▶ 임의인증

강제 인증이 없어도 민간단체에 의한 임의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 규제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용도의 여타 강제 인증과는 달리 민간 임의인증은 임의, 자율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제품을 증명하는 품질인증이므로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시험하신 후 DoC를 발행하시거나 해당 규격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을 경우 시험 후 해당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DoC는 말 그대로 업체 본인이 선언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온라인상에 게재된 DoC form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5.04.21.]

문 의 처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 <http://www.kotra.or.kr/KBC/northamerica/KTMIUI010M.html>

뉴욕무역관(미국) / 달라스무역관(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 마이애미무역관(미국) / 시카고무역관(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 워싱턴무역관(미국)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Trade Pro 무역애로상담 1566-5114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화장품 수출관련 국내기관

기관명: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

연락처: 031-8055-8753

<http://www.kcii.re.kr/>

※ 관련웹사이트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 >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

<https://www.kcii.re.kr/cis/>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http://www.allcos.biz/>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 화장품 해외수출문의 > 전문가 온라인 문의

http://www.allcos.biz/expert_qna_main.html

지원 사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3330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 패스트트랙(2월~8월) 참여기업 모집공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패스트트랙(상시모집)'과 '일반트랙(연 3회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부터 별도로 공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 사 업 명 :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일반트랙 1차 (230개사 내외,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541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지원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공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1억원	70%	60%	50%	*공고 참조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일반트랙 1차 모집 기간 : 25년 2월 24일(월) 09:00 ~ 3월 28일(금) 18:00까지

- 대상 인증 : 국가별 일반트랙 해외규격 인증 지원 대상(*공고 참조)

*공고 :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2 패스트트랙 (연간 500개사 내외, 상시모집,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8개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50%~70% 지원

<패스트트랙 지원대상 인증 (8종)>

미국	FCC(전기전자)	FDA(의료기기 class 1)	FDA(화장품 등록)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단, 위 인증에 해당하더라도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건당 3,000만원 이상 소요), 일반트랙(고비용인증)으로 신청

* 상기 인증(8종)이 아닌 해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트랙”으로 신청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1억원	70%	60%	50%	*공고 참조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 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패스트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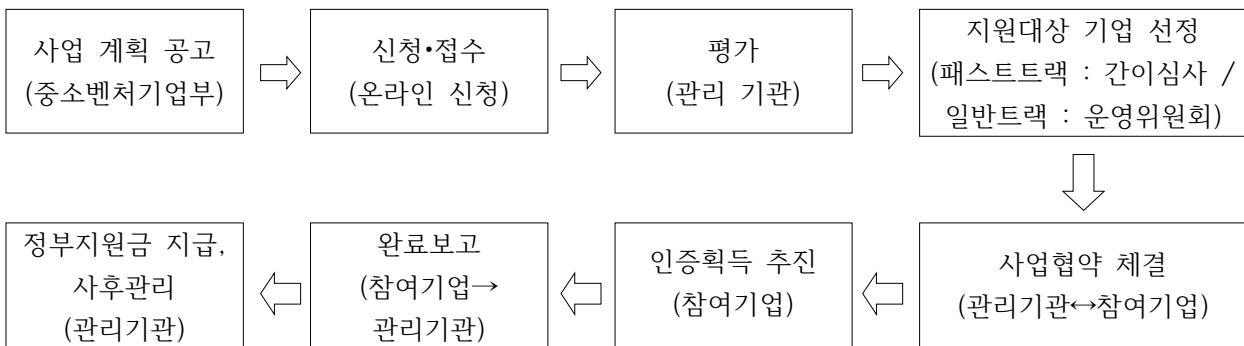
- 패스트트랙 모집 기간 : 25년 2월 24일(월) 09:00 ~ 8월 29일(금) 18:00까지(상시모집)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평가·선정 및 지원 등



▶ 문의처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303호 (수출인증지원센터)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지원사업 공고 > 수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list.do>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충남] 2025년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사업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5277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기] 2025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5204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1381
인증 표준 콜센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 · 모바일 · 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i/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Q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5.04.21.]